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57호

상벌 규칙 일부 개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소집 및 의결)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